

1. 개정 이유

2026. 10. 2.부터 공소청법(법률 제21490호, 2026. 3. 24. 공포) 및 개정 형사소송법(법률 제21857호, 2026. 8. 4. 공포)이 시행됨에 따라,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에 대한 관리·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“검찰청”에서 “공소청”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업무 처리현황을 보고받는 기관을 “검찰청”에서 “공소청”으로 변경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공소청법, 형사소송법, 공증인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법무부령 제 호

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) 공 증인은 공증업무처리현황을 매 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 <u>지</u> <u>방검찰청</u> 을 거쳐 법무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.	제11조(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) - ----- ----- ----- <u>지</u> <u>방공소청</u> ----- -----.